

제1부 강 관련 프랑스 법제

번역 : 이광운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은 프랑스 공법의 다양한 법제에 의해 규율된다 :

강은 공물의 부분이므로 공법인의 재산 법전에 수록된 “물건(物件)법”(CG3P),
환경법전에 수록된 “환경법”(강은 보존하여야 할 환경을 구성하므로),
강에서의 낚시와 사냥활동에 대하여는 “전원법전”,
강이 도시를 통과할 때는 강이 부동산 건설 정책을 복잡하게 하므로 도시계획법전에
수록된 “도시계획법”,
하천공물과 하운(河運)법전에 수록된 “하운법(河運法)”,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가장 간단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강에 대하여 접근하
는 것이다 : 통과 내용(물, 하천의 동식물)

제1장 틀로서의 강들

Nobert FOULQUIER

파리 1대학 교수

소르본느 법학연구원 도시계획 환경법연구소 공동소장

틀로서의 강들에 관하여는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 소유권, 보호, 개발

A. 강들의 소유권

강(유수지와 제방)들의 소유권은 오늘날 부정할 수 없는 과열음(CG3P L. 2111-7조와
L. 2111-10조 참조)을 내고 있어 장차 관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기술적, 자연적 위
협방지와 손해전보에 관한 2003년 7월 30일의 2003-699 법률까지는 프랑스-독일 국경을
흐르는 라인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강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물론 국가는 관리와 유지
를 다른 행정기관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참조). 그러나 국가는 강들의 소유권을 보유하
였다. 이러한 상황은 구제도 말기 수세기 동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국왕 그리
고 프랑스혁명 이후는 국가가 항상 강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였는데, 강들은 소통

의 수단으로서 나라와 공권력의 단일성과 국방상의 보호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2004년 8월 13일 법률부터는 더 이상 강들을 유지할 재정적 수단이 없는(그리고 의지도 없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비용이 드는 재산을 취득할 열의가 없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 법률(제32조)이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하안항구의 소유자가 되는 것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안항구를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항구들인 파리항과 스트라스부르항은 국가의 재산으로 남았기(간접적으로)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들에게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조물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드디어 강들과 제방과 인접부지들의 소유권이 해체되었다.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사인에 귀속되거나 공법인들에 귀속될 수 있다.

B. 보호

강들의 보호는 세 개의 입법에 의해 규율된다. 물건(domaine)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환경법. 이 법들은 특히 강들에 인접된 소유권에 대하여 지역(地役)¹⁾들을 예정하고 있다. 이 지역(地役)들은 사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국가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면제받을 법적 수단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1) 물건(domaine)입법

법률에 따르면 강들은 자연공물에 속하고 항구와 운하는 인공공물에 속한다. 공물²⁾은 공법인에 속하는 재산이면서 공익목적(공공서비스기관에게나 공중의 직접사용에)에 할당된 재산의 총체를 포함한다(CG3P L. 2111-1조). 시비를 피하고 하천공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행정기관이 운항 도는 물 공급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로가 공물(공법인의 ; 역자 주)에 속한다고 결정하였다.

강들이 공물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보호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강들은 불가양도하고 불가처분하다. 소유자들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양도할 수 없고, 제3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장기간 점유)할 수 없다. 더구나 강들은 훼손 또는 남용에 대하여 공로(公路)별 금제로 보호된다. 그것은 행정판사가 형사제재와 민사제재를 하는 제도다.

1) 공용지역(公用地役 servitude publique) ; 수인의무를 수반하는 공용제한. 역자 주.

2) 공법인의 공물. 역자 주.

Article L2111-1

Sous réserve de dispositions législatives spéciales, le domaine public d'une personne publique mentionnée à l'article L. 1 est constitué des biens lui appartenant qui sont soit affectés à l'usage direct du public, soit affectés à un service public pourvu qu'en ce cas ils fassent l'objet d'un aménagement indispensable à l'exécution des missions de ce service public.

2) 도시계획입법

도시계획법도 물건법 만큼이나 강들을 보호한다. 사실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과 공중보건의 이름이나 제한된 도시화(토지점유계획을 대체하는 지방도시계획을 통하여)의 지방정책의 이름으로 강들을 따라 건물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특히 홍수나 지반사태(地盤沙汰)로 부터 주민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방도시계획에서도 나타난다. 도시계획법은 이미 매우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연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들을 따라 건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입법

강들에 관한 환경입법의 첫 번째 목표는 물, 강에 서식하는 동식물(후술)들의 보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틀로서의 강을 무시하지 않는다. 우선, 입법은 강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겨냥 한다 : 홍수와 지반사태(地盤沙汰)의 위험. 이를 위하여 환경법전(환경법전 L. 561-1 조 이하)이 자연재해의 예방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만이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전원법전(L. 211-7조)은 지방자치단체가 물정비 및 관리계획이 있으면 물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라 공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긴급한 성격의 모든 공사, 작용, 구조물, 시설들에 대한 조사, 집행, 활용을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할 수 있다 :

1. 유역 또는 유역조각의 정비
2. 접근로를 포함한 수로, 운하, 호수 또는 수면의 유지와 정비
8. 부지, 수중생태계와 습지 및 강변 숲 지대의 보호와 복원

전원법전(L. 211-12조) 또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들의 집단의 요구에 의하여 공용지역(公用地役)이 수로나 수로의 지류의 기슭 또는 유역이나 강어귀에 위치한 토지에 설정될 수 있다.” 이 지역(地役)을 다음의 하나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

1. 샘플 또는 시냇물의 일시적 저장장소의 마련
2. 기본적인 수리(水理)적이고 지형적인 성격 보존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소위 “수로의 이동영역”에서 도시화된 지역의 상류에 하천부지의 이동영역을 만들거나 복구
3. 전원법전 L. 212-5-1조를 적용하여 정해지는 소위 “물관리를 위한 전략지역”인 습지의 보존 또는 복구. 이 구역에서는 지사가 강가 소유자에게 강물의 흐름과 거기에 설치된 구조물의 보존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역(地役)을 설정할 수 있다.

C. 강의 사용

틀로서의 강과 강변은 두 가지 사용형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집단적 사용 또는 배타적 사용

1) 집단적 사용

공공재산의 사용은 제3자에 의한 재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때 집단적이라고 한다. 집단적 사용은 일반적으로 자유로, 비개인적이며, 익명이며, 재산의 소유자의 사전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강의 집단적 사용은 운항(運航)으로 이루어진다. 운항(運航)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운전할 기술적 능력을 증명하는 허가증으로 충분하다. 강변 또한 집단적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CG3P는 주민들에게 강변산책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하천공물의 강을 따라 길을 터줄 지역(地役)(예선지역(曳船地役)과 계단지역(地役))을 설정하고 있다.

2) 배타적 사용

제3자에 의한 모든 다른 사용을 배제할 때 공공재산의 사용이 배타적이라고 한다. 그러한 공공재산의 사용은 특권을 형성하며 재산의 관리자의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CG3P L. 21221-1조) 이것은 사적이며, 기명이며, 보통 유료이다. 그러한 허가는 허가가 부여된 활동이 공공재산의 제공과 양립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 허가는 운항(운항)과 주민에 대한 물 공급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강 수면 자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형태 배나 운반선의 정박이다. 강변도 공물에 속하면 점유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주민들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고, 도시계획상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공물의 불가양도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허가는 유동적이며 공익상의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 입법자는 덜 유동적인 허가를 창설하였는데 : 그것은 물권설정허가이다. 그러나 이 허가는 자연하천공물에 대하여는 부여될 수 없다. 그것은 인공하천공물, 즉 인간의 손에 의해 가공된 것(운하변, 댐 등)에 대하여만 부여될 수 있다.

제2장 내용으로서의 강3)

Meryem DEFFAIRI

파리 1대학 박사과정

소르본느 법학연구원 도시계획 환경법연구소 연구원

3) 발췌번역.

277,000 km 이상의 수로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확히 말해 강에 대한 법 또는 보다 폭을 넓혀 수로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프랑스 강들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조항들로부터 자아내야 한다. 사실,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물로 분류된 강들은 전통적으로 재산행정법에 관련된다. 그러나 재산행정법 규정에 다수의 환경법, 도시계획법, 민법, 전원법 등의 규정들을 추가하여야 한다.

라틴어의 fluvius에서 유래하는 강(fleuve)은 지류의 수가 많고, 유량이 많으며 수로의 길이가 길며 바다로 흘러들고,⁵⁾ 발원지의 이름이 바다까지 유지되는 큰 강(rivière)을 가리킨다. 강(fleuve)이 정점에서는 수력의 피라미드에 달한다 할지라도 프랑스 법상으로는 수로나 제방의 개념과 같은 엄격한 법적 정의가 없다. 이러한 개념적 결핍은 몇몇 학자들로 부터 프랑스 물 지도망의 중요성과 강이 영토의 단일성과 정체성을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탁월한 역할을 감안할 때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강은 프랑스 법에서는 고전적으로 운항(運航)길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강을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한 입법자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확인된 강물의 다양한 사용과 수자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강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을 개선할 필요성과 강의 총체적이고 일관된 법적 보호를 향하여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할 뿐이다.

보다 넓게는 환경론자들의 접근은 강에 대한 단순한 인간 중심적인 개념의 포기를 유도하고, 하천생태계⁶⁾에 주목 하는데, 말하자면 강물과 강을 에워싼 동식물환경을 결합한 법적 보호이다.

강에 대한 특정 규율이 명백히 없는 한계를 넘어 프랑스 법은 어떻게 강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할 수 있을까? 환경법은 강의 환경적 악화를 제한하기 위한 재산법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까? 하천생태계의 필요한 보호는 균형개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천법”은 그러므로 강 수로 보호의 법적 보호 수단의 통합 의지로 점철된 움직임은 법이다. 자연자원의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하천법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진화를 특별히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환경법은 강 주변 환경과 하천생태계를 고려(II)하기 전에 우선 강물 보호의 법적 수단(I)을 강화한다.

4) 2008년 니스에서 있었던 제 104차 프랑스 공증인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나온 수치.

5) petit Robert 불어사전.

6) 이점에 관하여는 M. Prieur, le fleuve et le droit de l'environnement in "Le fleuve et ses métamorphoses", Université Lyon III, Didier Erudition, 1993 p.343 이하 참조.

I. 강물 보호의 법적 수단의 강화

강물의 초기 법적 지위는 수원의 제한된 보호 밖에는 부여하지 못하였고(A), 환경법이 강물보호의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하여 강물 오염에 대한 방지 규정을 강화하였다(B).

A. 제한된 초기보호의 수단

강물에 적용되는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물의 법적 지위를 정의를 규정하여야 한다.

강이 하천공물인 공물수로로 규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수로의 하상(河床)만 공법인의 소유이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 자체는 전통적으로 공유물, *res communis*로서 배타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전통적으로 수로의 물에 대하여 우선적 사용권을 향유하여 왔다.

강의 이와 같은 이중적 지위는 수자원보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공유물로서의 강물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이 강조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수로의 공소유권은 선협적으로 환경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⁷⁾ 또한 프리웨르 교수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해는 환경의 단일성, 하안(河岸)과 하상(河床) 식물의 취약성과 풍부성, 대하상(大河床), 하천 조직의 생산성에 있어 범람지대의 역할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⁸⁾

그리하여 강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운항로를 유지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그 예로, 공물의 불가양도성과 불가처분성 원칙 이외에도 운항 가능한 강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자연적 유통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 의무, 공로(公路)에서의 과태료, 지역(地役 *servitude*)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호수단들은 때로는 양적 도는 질적으로 강물을 보호하였으나 양적 보호의 목적이 운항로⁹⁾를 보호하는 것인 한, “물수제비”(간접적인 것)일 뿐이었다.

1961년 3월 22일의 콩세이데따의 유일한 판례가 공로(公路)에서의 과태료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수질오염을 제재하였으나,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수로공물의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었다.¹⁰⁾

7) V. Inseguet Brisset, *Propriété publique et environnement*, LGDJ, 1997.

8) M. Prieur, *op. Cit.*, p.344.

9) G. CHVARIER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s cours d'eaux domaniaux, RFDA 2004, p.933 cité par PH. Marc, *op.cit.*, p.64.

10) PH. Marc, *op.cit.*, p.64 참조, .CE 22 mars 1961, Ville de Charville, Rec. p.204. 그러나 공물경찰상, 비위생적인 물건 도는 어떤 물건을 수로공물의 하상에 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조치는 프리웨르 교수에

따라서 입법자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수년간에 걸쳐 환경법에 수원(水原)보호를 위한 진정한 무기들을 마련함으로써 치유하여야 하였다.

B. 환경법에 의한 강물의 보호

수질보호는 환경법의 주요 축 중의 하나다. 물과 물환경에 할당된 제2편 제1장은 프랑스 환경법전의 가장 긴 장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이 부분의 입법으로는 4가지 법률을 들 수 있다 :

- ① 수질체계와 복구 및 오염방지에 관한 1964년 12월 16일의 법률 64-1245호
- ② 수질에 관한 1992년 1월 3일의 법률 92-3호
- ③ 수질에 대한 기본준칙의 수용에 관한 2004년 4월 21일의 법률 2004-338호
- ④ 수질과 물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의 법률 2006-1772호

이러한 다양한 법률들이 정립한 보호의 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원의 균형잡힌 관리와 생태계의 균형을 존중하고, 수질관리 기관이며 계획인 ICPE¹¹⁾제도에 반영된 허가제 또는 신고제에 의하여 취수나 배수에 대한 통제를 기본 축으로 조직된 수원을 총합적으로 보호한다.

그리하여 강물은 이후로 수개의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계획과 관리의 복합시스템에 속한다. 프랑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보호 법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수질의 정비와 관리계획에 의한 수질의 정비 및 관리의 조직적인 계획이 수질오염방지의 첫 번째 도구이다.¹²⁾ SDAGE¹³⁾는 각 유역 또는 유역집단에 대한 수원의 균형잡힌 기본 방향을 정하고 수질, 수량, 정비의 목표를 정한다. SDAGE는 유역조정관이 주도한다. SDAGE는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지사가 승인한다. SDAGE는 그 내용이 SDAGE에 부합하여야 할 SAGE¹⁴⁾를 정하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센느강 노르망디 분지에 2009년 10월 29일에 채택된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채택된 SDAGE는 유역물의 3분의 2에 대해 "좋은 생태 지위"의 인증을 제공합니다.¹⁵⁾ 이러한 문서는 수질 목표를 지역 사회 수준에서 부과 집행하도록 한다.

따르면 오염을 제재하려는 행정청에 의한 확장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의 환경법 Dalloz, 5e éd, 2003, p.581.

11)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환경보호 위험시설.

12) 환경법전 L. 212-1조 이하 참조.

13) 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de gestion des eaux 수질 정비·관리 기본계획.

14) Schéma d'aménagement et de gestion des eaux 수질 정비·관리 계획.

15) www.eau-seinenormandie.fr 좋은 생태 지위는 물과 물의 화학적 성분에 있어 강, 호수, 어귀, 연안의 좋

SAGE는 그 것 대로 사용의 일반목표와 지표수 또는 지하수, 수생 생태계와 습지의 양적 질적 보호목표를 정한다. SAGE는 물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사가 구성하는 지방위원회가 수립한다. 물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행정 결정은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물 분야에 있어서 표결된 다양한 법률들은 SDAGE와 SAGE의 목표들을 대폭 수정하여 확대시켰는데 1992년 법률이 대표적이다. 취수와 배수에 대한 통제가 수자원의 오염방지에 대한 수질경찰의 주요도구이다. 1964년부터 알려진 절차는 1992년에 대체되어 법률은 이제 ICPE제도에 근접한 진정한 취수와 배수의 신고와 허가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허가제 또는 신고제는 환경법전 L. 214-1조에 규정되어 있다 :

“The following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L. 214-2 to 214-6: installations not appearing in the nomenclature of classified facilities, structures, works and activities carried out for non-domestic purposes by any person or body, public or private, and resulting in the drawing of surface or underground water, whether returned or not, or in a change in the level or method of flow of water or discharges, the destruction of spawning grounds, zones for the growth or feeding of pisciculture fauna, runoff,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r deposits, chronic or periodic, even if these are not pollutant.”

지사의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허가는 매우 기술적인 규정을 수반하고 있고, 신고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수질관리청의 사용료는 환경에 대한 오염자부담의 원칙, 예방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질오염 방지의 법적 도구이다.¹⁶⁾

은 상태로 이해된다. 좋은 생태 지위는 2015년까지 유럽이 원하는 목표 중의 하나다.

16) Article L213-10

(Act no. 2003-699 of 30 July 2003 Article 46 Official Journal of 31 July 2003)

(Act no. 2005-157 of 23 February 2005 Article 136 II Official Journal of 24 February 2005)

In order to facilitate, at the level of a hydrographic basin or sub-basin, flood prevention and balanc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s well a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s, the local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ir groupings can combine to form an établissement public territorial de bassin (local water-basin public institution).

This public institution is composed and operates, depending on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governing institutions set up in application of Articles L. 5421-1 to L. 5421-6 or Articles L. 5721-1 to L. 5721-8 of the same Code.

The Préfet coordinating the basin sets the scope of intervention of this public institution by decree and further to an opinion from the water basin committee and local authorities concerned and, where appropriate, after obtaining the opinion of the local water committee.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present Article are set by a Conseil d'Etat decree.

환경법전 L. 210-1조 1항은 “물은 국가의 공유재산이다.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는 보호, 개발과 용수의 개발은 공익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독립된 부문별 정책은 자연자원의 효과적 보호에 효과적이지 아니며 “강들의 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의하여 “강 생태계의 총체적인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강 생태계의 보호

강 생태계의 총체적인 시각은 강과 물지도,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 유역전부와 밀접한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이점에서 강과 그 환경(A) 및 강의 동식물의 보호(B)를 살펴보고 한다.

A. 강환경에 있어서 강의 보호

환경법전 L. 332-1조 :

I. - Parts of the territory of one or several communes may be classified a national nature reserve, when the preservation of fauna, flora, ground, water, mineral and fossil deposit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general, is of special interest and it is important to remove any artificial interventions likely to damage them. Classification may affect public coastal areas, and French territorial waters.

II. - The following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regard:

1° The preservation of animal or plant species and habitats that are endangered on all or part of the national territory or display remarkable qualities;

2° The regeneration of animal or plant populations or their habitats;

3° The preservation of botanical gardens and arboretums forming reserves of endangered, rare or remarkable plant species;

4° The preservation of biotopes and remarkable geological, geomorphological or speleological formations;

5° The preservation or formation of stopping points on the main wildlife migratory paths;

6°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tudies that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knowledge;

7° The preservation of sites of specific interest for the study of the evolution of life forms and the first human activities.

환경법은 또한 습지보호를 위하여 특별지구를 마련하고 있다.

B. 강의 동식물 보호

환경법전 L. 411-5 조 :

I. - The natural heritage inventory is undertaken for the entire national mainland, river and marine territory. By natural heritage inventory is meant the inventory of ecological, fauna, floral, geological, mineralogical and paleontological resources.

The State ensures its design, undertaking and assessment. The regions can be involved in the compiling of this invento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competencies. In addition, the territorial authorities can contribute to the knowledge of the natural heritage by compiling local inventories.

The Préfet for the region, the Préfets of the Départements and the other territorial authorities concerned are informed of these projects.

These inventories are compiled under the scientific aegis of the National Natural History Museum.

When drawing up a plan, programme or project, the Préfet will inform the commune or the competent public inter-commune co-operation body of all the data held in these inventories that might be useful in this case.

II. -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29 December 1892 on damage caused to private property by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also apply to the execution of operations necessary to compiling these inventories. These provisions also apply to the knowledge of the soil and the vegetation and to any other type of ecological information on the areas on which inventories take place.

III. - Is set up in every region, a regional scientific council dealing with the natural heritage. This council is made up of designated specialists, selected for their scientific knowledge, especially from universities, research bodies, scholarly bodies and regional museums. It covers all life and earth sciences dealing with land, river and sea environments.

Its members are named by decree from the Préfet following the opinion of the chairman of the regional council.

The members will then elect a chairman.

It can be called upon for advice by the regional Préfet or by the chairman of the regional council on any question relating to the inventory and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heritage.

A Conseil d'Etat decree defines its composition, its fields of intervention and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can be called upon.

환경법전 L. 400-1조 :

“수중환경의 보존과 양어재산의 보호는 공익이다.

양어재산의 보호는 낚시, 사회적이고 경제적 성격의 활동이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양어자원의 균형된 관리를 의미한다.”

수질보호로부터 강 생태계의 보호에 이르기 까지 환경법은 역사적으로 재산법에만 관계하던 강들의 법을 이제부터는 전부 관통한다. 이제부터의 도전은 “지속가능한 도시” 속으로 강을 통합시키도록 환경론자들의 관심 점과 토지정비정책을 결합시키는데 있다.